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24호 2020. 1. 27.(월)

공 고

-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 2
-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9
-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18

회람							
----	--	--	--	--	--	--	--

목포시 공고 제 2020 - 88호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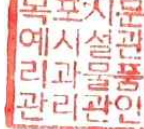
2020년 1월 27 일

목 포 시 장

1. 사유: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신조 및 폐기
2. 등록 및 폐기일: 2020. 1. 6.(월)
3.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글씨체	비 고
등 록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인		2.1cm*2.1cm 푸른전남체	
	목포시기업유치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9cm*1.9cm 푸른전남체	
	목포시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인		2.1cm*2.1cm 푸른전남체	

구 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글씨체	비 고
	목포시남해수질관리사무소 징수관인		2.0cm*2.0cm 푸른전남체	
	목포시북향수질관리사무소장인		1.9cm*1.9cm 푸른전남체	
등 록	목포시북향수질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인		1.9cm*1.9cm 푸른전남체	
	목포시북향수질관리사무소 징수관인		2.1cm*2.1cm 푸른전남체	
	목포시북향수질관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푸른전남체	
	목포시북향수질관리사무소 수입금출납원인		1.7cm*1.7cm 푸른전남체	
	목포시체육시설관리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7cm*1.7cm 푸른전남체	
	목포시체육시설관리과 분임불품출납원인		1.7cm*1.7cm 푸른전남체	
	목포시체육시설관리과 분임수입금출납원인		1.7cm*1.7cm 푸른전남체	

구 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글씨체	비 고
	목포시체육시설관리과 징수관인		1.8cm*1.8cm 푸른전남체	
	목포시체육시설관리과 물품관리관인		1.8cm*1.8cm 푸른전남체	
등 록	목포시체육시설관리과 분임경리관인		1.8cm*1.8cm 푸른전남체	
	목포시체육시설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푸른전남체	
	목포시문예시설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7cm*1.7cm 푸른전남체	
	목포시문예시설관리과 물품출납원인		1.7cm*1.7cm 푸른전남체	
	목포시문예시설관리과 수입금출납원인		1.7cm*1.7cm 푸른전남체	
	목포시문예시설관리과 분임재무관인		2.1cm*2.1cm 푸른전남체	
	목포시문예시설관리과 물품관리관인		2.1cm*2.1cm 푸른전남체	

구 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글씨체	비 고
폐 기	목포시문예시설관리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1cm*2.1cm 푸른전남체	
	목포시문예시설관리과 징수관인		2.1cm*2.1cm 푸른전남체	
	목포시환경관리사업단장인		2.1cm*2.1cm 푸른전남체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인		2.1cm*2.1cm 푸른전남체	
	목포시남해수질관리과장인		2.1cm*2.1cm 푸른전남체	
	목포시남해수질관리과 징수관인		2.0cm*2.0cm 푸른전남체	
	목포시북항수질관리과장인		2.1cm*2.1cm 푸른전남체	
	목포시북항수질관리과 분임재무관인		2.0cm*2.0cm 푸른전남체	

구 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글씨체	비 고
폐 기	목포시북항수질관리과 징수관인		2.0cm*2.0cm 푸른전남체	
	목포시북항수질관리과 수입금출납원인		1.8cm*1.8cm 푸른전남체	
	목포시북항수질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푸른전남체	
	목포시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인		2.1cm*2.1cm 푸른전남체	
	목포시문예시설관리사무소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푸른전남체	
	목포시문예시설관리사무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8cm*1.8cm 푸른전남체	
	목포시문예시설관리사무소 징수관인		2.0cm*2.0cm 푸른전남체	
	목포시문예시설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인		2.0cm*2.0cm 푸른전남체	
	목포시문예시설관리사무소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푸른전남체	

구 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글씨체	비 고
폐 기	목포시문예시설관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푸른전남체	
	목포시문예시설관리사무소 수입금출납원인		1.8cm*1.8cm 푸른전남체	
	목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인		2.1cm*2.1cm 푸른전남체	
	목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분임수입금출납원인		1.8cm*1.8cm 푸른전남체	
	목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8cm*1.8cm 푸른전남체	
	목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푸른전남체	
	목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징수관인		2.0cm*2.0cm 푸른전남체	
	목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푸른전남체	
	목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인		2.0cm*2.0cm 푸른전남체	

구 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글씨체	비 고
	목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푸른전남체	
	목포시기업유치실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푸른전남체	
	목포시농상과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2.0cm*2.0cm 한글전서체	

목포시 공고 제2020-103호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7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588(2019.8.6.)호와 관련, 의안번호 제2019 - 359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 위탁사무 및 체육단체 운영지원 조항 등의 추가로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

2. 주요내용

- 체육진흥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법적근거 마련 (안 제4조, 제10조제1항)
-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의 법적근거 및 구체적 지급기준에 대한 규칙제정 근거 마련 (안 제10조의2)
 - 제1항 : 인건비·운영비의 지원 범위
 - 제2항 : 인건비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및 규칙제정 근거
 - 제3항 : 인건비·운영비 관련 지자체와 사전 협의

○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명문화 (안 제10조의3, 제10조의 4)

○ 체육진흥 보조금 지원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5.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20. 1. 27.(월) ~ 2. 17.(월) / 21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교육체육과(☎061-270-3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건 제 출 서

조 례 명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시 행 규 칙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를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제4조(체육진흥사업의 시행),”으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목포시 체육회 및 목포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장애인체육회는 위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목포시체육회, 목포시장애인체육회 및 비영리 법인·단체(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4(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체육진흥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를 “체육회등”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체육회등의 운영에 관해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회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체육진흥사업의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체육진흥사업의 시행) ----- ----- -----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위탁) ① <u>시장은 제5조</u> (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제6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제8조(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제9조(학교체육의 지원)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체육회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위탁) ① <u>시장은 제4조</u> (체육진흥사업의 시행),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10조의2(시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u> ① <u>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장애인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u> <u>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u> <u>2. 관서운영 기본경비</u> <u>3. 사무시설 임차료</u> <u>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u>

<신 설>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장애인체육회는 위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목포시체육회, 목포시장애인체육회 및 비영리 법인·단체(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

<신 설>

제11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체육진흥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그 업무에 대한 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4(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검사 등) ① -----
체육회등-----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체육회등의 운

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회등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
해서는 관련된 징계요구나 고발조
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목포시 공고 제2020-104호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7일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해 목포시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참여도 제고 및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
-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기준의 구체적 범위, 지원절차 및 서식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지원기준의 범위 규정 (안 제2조)
 - 제1항 : 예산의 범위 정의
 - 제2항 : 지원 비율의 정의
 - 제3항 :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정의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규정 (안 제3조)
 - 제1항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 제2항 : 서류 검토 및 지급처 등 지급절차 규정

○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안 제4조)

○ 지원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 규정 (안 제5조)

3. 제정 시행규칙안 : 붙임1

4.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6. 예산사항 : 18,400천원(시비)

7. 입법예고 기간 : 2020. 1. 27.(월) ~ 2. 17.(월) / 21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교육체육과(☎061-270-3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건 제 출 서

시 행 규 칙 명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시 행 규 칙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의 범위) ①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해당연도 예산을 말한다.

② 지원 비율은 해당연도 예산액을 사용료 지원 신청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원 금액은 사용료의 30%를 넘을 수 없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은 연 2회로 나누어 계약사항을 확인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협조

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지급한 단체나 동호회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지원을 제한한다.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단체·동호회 명 (회원 수)		(회원 수 : 명)	
사용 학교시설명 (주 소/전화번호)		(주소 : 전남 목포시 / 전화번호 :)	
사 용 개 요	○ 종 목 : ○ 활동인원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단체· 동호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휴대폰)	SMS 수신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핸드폰 : 집전화 :
계좌번호(예금주)	()	은행명	
주 소			
지원신청금액(원)	금 원 (금 원정)		
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주소,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목포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체육과장, 061-270-340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시는 신청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u>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목포시(교육체육과장)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은행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목포시 교육체육과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정보를 파기(소각)합니다. ○ 제 3자의 제공 상기의 수집·이용·제공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 인 정 보 수집·이용·제공 동 의 여 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별지 제2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 용 료 지 원 관 리 대 장

[illegible]